

第20次 圖書館·情報學 學術세미나 第3主題

著作權法에 따른 圖書館 關聯規定 및 資料使用에 關한 考察

江原大學校 圖書館
崔 根 完

— <目 次> —

- | | |
|-------------------------------------|------------------------------------|
| I. 序 言 | 등에서의 複製規定 |
| II. 著作權法の 沿革 및 內容 | IV. 圖書館 資料 使用에 關한
著作權法の 資料複製 範圍 |
| 1. 우리나라 著作權法の 沿革 | 1. 自由利用이 可能的한 著作物 |
| 2. 著作權法の 內容 | 2.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 可能的한
著作物 |
| III. 著作權法에 關聯된 圖書館
規定 | V. 結 語 |
| 1. 著作權法の 著作物規定과 圖
書館振興法の 資料規定 比較 | 參考文獻 |
| 2. 著作權法에 나타난 圖書館 | |

I. 序 言

現代社會를 우리는 情報化社會 또는 高度産業化社會라고 한다. 이
러한 社會에서는 知識과 情報를 提共하는 圖書館의 機能은 매우 重

要하다고 할 수 있으며, 圖書館은 利用者의 奉仕를 위한 多様な 資料를 提共하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오늘날 圖書館의 資料利用중 利用者의 要求에 의한 資料의 複寫가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圖書館의 資料複製에 있어서는 改正된 우리나라 著作權法에서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할 수 있는 規定이 明文化되어 있다. 著作權法에서 著作者 등 權利者의 權利를 法的으로 保護하여 주고 圖書館이 갖고 있는 公共的인 機能을 살려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各種資料의 複製利用을 가능하게 하였다.

著作權保護는 知的所有權¹⁾에 포함되는 部分으로서 世界的인 財產權의 權利로서 保護되고 있으며, 著作權에 관한 사항은 貿易商品과 함께 國際貿易去來의 對象이 되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圖書館은 全般的으로 圖書館에서 著作權 侵害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에 對한 關心이 不足하며, 將來의 著作權 紛爭의 所持를 없애고 合理的으로 著作物 利用을 해야 하는 狀況에 접해 있다.

이에 本考에서는 改正된 著作權法의 主要 內容을 살펴보고 著作權法의 著作物規定과 圖書館振興法에 나타난 圖書館資料規定을 比較하여 보며 著作權法에 나타난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規定과 圖書館資料使用에 關한 著作權法의 資料複製範圍를 考察해 봄으로써 圖書館資

1)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의 지적 활동에 관련된 모든 權利를 總稱하는 것이다. 1970년에 발효한 “世界知的所有權機構의 設立에 關한 協約” 즉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協約은 제2조에서 知的所有權을 일곱가지로 定義하고 있다.

첫째: 文學的, 美術的, 學術的 著作物에 關한 權利

둘째: 實演, 音盤 또는 放送에 關한 權利

셋째: 發明에 關한 權利

넷째: 科學上의 發見에 關한 權利

다섯째: 意匠(産業的 디자인)에 關한 權利

여섯째: 商標와 商號에 關한 權利

일곱째: 不正競爭 防止의 觀點에서 保護되는 權利

자료: 許燾成, 新著作權法逐條概說, (서울: 범우사, 1988), pp. 13~14.

料의 公正한 使用을 밝히는데 그 目的이 있다.

研究의 範圍 및 方法은 著作權法에 나타난 圖書館에 關聯된 諸規定과 圖書館振興法의 法條項을 對照하여 分析하는 方法으로 本 研究를 進行하였다.

II. 著作權法の 沿革 및 內容

1. 우리나라 著作權法の 沿革

우리나라의 著作權法の 歷史는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이 韓國을 支配하게 되자 美國이 韓國內에서의 自國의 知的所有權 保護를 要求하여 最初로 締結된 것이 1908년 8월 12일의 “韓國에 있어서 發明, 意匠, 商標 및 著作權에 關한 美·日條約”이었다. 同條約 第1條는 日本國 政府는 特許權, 意匠權, 商標權 및 著作權에 關하여 日本에서 施行되고 있는 法令을 이 條約의 施行과 同時에 韓國에서 施行하고, 美國民에 대하여는 韓·日 兩國民과 同一한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條約에 따라 1908年 8月 12日 著作權令(勅令 第200號)이 公布되어 1908年 8月 16日부터 當時 日本 著作權法이 韓國에 依用되게 되었다. 1910年 韓日合邦이 됨에 따라 1910年 8月 29日부터 “著作權令을 朝鮮에 施行하는데 關한 件(勅令 第339號)”에 依하여 從來의 “依用”에서 直接 “施行”으로 轉換되었다.²⁾

2) 宋永植, 法の 적용과 집행, 저작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급변하는 환경하에서의 신저작권법의 문제),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87. 1. p. 2.

그 후 美軍政 大韓民國政府樹立 初期까지 그대로 施行하여 오다가 1957年 日本著作權法을 모델로 하여 1957年 1月 28日 著作權法을 制定하였으며 (法律 第43號) 몇차례의 改正作業이 政府와 關聯團體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實際改正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施行되고 있었다.³⁾

이러한 實定法의 後進性과 外國人 著作權의 保護를 要求하는 美國의 壓力이 原因이 되어 法改正論과 條約 加入論이 오래동안 學論되던 끝에 마침내 政府는 1986年 9月 20日에 著作權法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그리고 그 改正法律案은 1986年 12月 17日 國會 本會議에서 議決된 後 같은 해 12月 31日에 公布(法律 第3916號)되었으며,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⁴⁾ 또한 著作權法上에 保護를 받는 著作物로 規定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이 制定되었다.

우리나라는 同年 10月부터 世界著作權條約(UCC)⁵⁾의 締結國이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著作權協商에 明示되어 있지 않았던 外國人 著作物의 權利를 保護해야 하는 義務를 가지게 되었다.

2. 著作權法의 內容

社會 및 文化의 發達로 因하여 著作權者의 權利와 이에 隣接하는 權利를 保護하고 著作物의 公正한 利用을 도모함으로써 文化의 向上

3) 黃油仁, 鄭順姬, 崔現鎬 共著, 著作權法, (서울: 법문사, 1988), p. 22.

4) 韓勝憲, 著作權의 法制와 實務, (서울: 三民社, 1988), p. 25.

5) 世界著作權協約(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은 1952년 제네바에서 締結되었으며, 1971년 파리에서 改正된 國際著作權의 代表的인 條約이다. 現在 加入國은 86個國이다.

發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著作權法이 總9章 111個 條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著作權法 施行令은 總41條, 著作權法 施行規則은 總10條로 되어 있다.

著作權法의 主要內容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著作權에 關聯되는 用語의 定義 및 著作物의 例示를 現實에 맞도록 具體적으로 細分化하여 規定함(法 第2條 및 第4條).

나. 外國人 著作物의 保護規定을 補完하여 外國人 著作物은 우리나라가 加入 또는 締結한 條約에 따라 保護하되, 相互主義原則에 立脚하여 우리나라 著作物을 保護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著作物에 대하여는 그에 相應하게 制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를 받지 못한 外國著作物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溯及效를 認定하지 아니함(法 第3條 및 附則 第2條 第1項).

다. 法人, 團體 그 밖의 使用者의 企劃下에 그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義務上作成하는 著作物로서 法人, 團體등의 名義로 公表된 著作物의 著作者는 契約 또는 勤務規則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法人, 團體 등이 되도록 함(法 第9條).

라. 著作財產權을 複製權, 公演權, 放送權, 展示權, 配布權, 2次的 著作物作成權 등으로 細分하여 規定하고 保護期間은 外國의 立法例에 맞추어 死亡後 30년까지에서 死亡後 50년까지로 延長함(法 第16條 내지 第21條 및 第36條).

마. 著作財產權을 制限할 수 있는 경우를 著作財產權者의 保護와 그의 公共的인 利用側面을 考慮하여 具體적으로 정함.

바. 公表된 著作物의 利用이 불가피하나 著作財產權者와 協議가 成

6) 大韓民國政府, 官報, 제10526호 그 21, 1986, 12. 31. pp. 227~241.

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相當한 補償金を 供託하거나 支給한 後 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는 境遇를 정함.

사. 著作隣接權을 新設하여 實演者에게는 錄音, 錄畫 및 放送權을 音盤製作者에게는 複製, 配布權을 放送事業者에게는 複製權, 同時中繼放送權을 20年間 認定함(法 第61條 내지 第73條).

아. 映像製作物에 대하여는 統合藝術로서의 特性을 살리고 그 利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著作財産權者가 映像化를 許諾한 境遇에는 映像著作物의 複製, 配布, 公開上映權 등까지 포함하여 許諾한 것으로 보며, 映像製作物製作에 참여한 者의 著作物 利用權利가 映像製作者에게 讓渡된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74條 및 第75條).

자. 이 法에 의하여 保護되는 權利를 그 權利者를 위하여 代理, 仲介 또는 信託管理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著作權 委託管理業 制度를 新設하되, 當該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함(法 第78條 내지 第80條).

차. 著作權審議會를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로 擴大, 改編하여 著作權에 關한 紛爭의 調停機能과 各種 補償金의 基準에 關한 審議 등을 擔當하도록 함(法 第81條 내지 法 第90條).

카. 著作權者, 그 밖의 權利者는 그의 權利를 侵害하거나 侵害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侵害의 停止 또는 豫防과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함(法 第91條).

타. 著作財産權者의 許諾없이 著作物을 複製한 경우 그 不正複製物의 부수算定이 어려운 때에는 出版物은 5千部, 音盤은 1萬枚로 推定하도록 함(法 第94條).

Ⅲ. 著作權法에 關聯된 圖書館 規定

1. 著作權法の 著作物規定과 圖書館振興法の 資料規定 比較

著作權法에 規定한 著作物の 範圍에는 圖書館振興法에서 規定한 圖書館資料가 包含되며, 圖書館의 多様な 資料使用이 著作權法에 影響을 받는다. 著作權法에 있어서 著作物規定과 圖書館振興法の 資料規定을 比較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著作權法の 著作物規定

著作權法에 나타난 著作物の 關聯規定을 著作物은 表現 形態別로 區分하여 例示하였으며 原著作物を 基本으로 하여 著作한 2次的 著作物과 編輯著作物에 關하여 規定하였다.

(1) 著作物の 例示 등에 關한 規定(法 第4條)

- (가) 小說·詩·論文 講演·演述·脚本 그 밖의 語文著作物
- (나) 音樂著作物
- (다) 演劇 및 舞蹈, 無言劇 등을 包含하는 建築著作物
- (라) 繪畫·書藝·圖案·彫刻·工藝·應用美術 作品. 그 밖의 美術著作物
- (마) 建築物·建築을 위한 模型 및 設計圖書를 包含하는 建築著作物
- (바) 寫眞 및 이와 類似한 製作方法으로 作成된 것을 包含하는 寫眞著作物
- (사) 映像著作物

(아) 地圖·圖表·設計圖·略圖·模型 그 밖의 模型著作物

(자)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物

※ 第1項 第9號(자)의 規定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物의 保護 等に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2) 2次的 著作物의 規定(法 第5條)

(가) 原著作物을 翻譯·編曲·變形·脚色·映像製作 그 밖의 方法으로 작성한 創作物(이하 “2次的 著作物”이라 한다)은 獨自的인 著作物로서 保護된다.

(나) 2次的 著作物의 保護는 그 原著作物의 著作者의 權利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3) 編輯著作物(法 第6條)

(가) 編輯物로서 그 素材의 選擇 또는 配列이 創作性이 있는 것(이하 “編輯著作物”이라 한다)은 獨自的인 著作物로서 保護된다.

(나) 編輯著作物의 保護는 그 編輯著作物의 構成部分이 되는 著作物의 著作者의 權利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2) 圖書館資料에 關한 規定(圖書館振興法 第2條 2項)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整理·分析·保存·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寫眞·그림 등 各種 印刷資料, 映畫필름·슬라이드·音盤·비디오物·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 등 視聽覺 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 등 行政資料, 鄉土資料 其他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必要한 資料를 말한다.

圖書館振興法에서 規定한 圖書館資料는 著作權法에서 規定한 著作物의 範圍에 包含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圖書館의 各種 資料의 使用이 著作權法에 影響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2. 著作權法에 나타난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規定

著作權法에서는 圖書館 등에서 利用者의 要求에 따라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는 條項과 資料의 自體保存 및 다른 圖書館 등의 要求에 따라 複製할 수 있는 規定 등이 明文化되어 圖書館의 公共的 奉仕活動인 資料複寫를 提供할 수 있는 機能을 活性化하였다.

1) 著作權法에 있어서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 規定(法 第28條)

圖書館法에 의한 圖書館 및 圖書·文書·記錄 그 밖의 資料를 公衆의 利用에 提供하는 施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圖書館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保管된 資料를 使用하여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

- ① 調査,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利用者의 要求에 따라 公布된 著作物의 一部分의 複製物을 1人 1部에 한하여 提供하는 境遇
- ② 圖書館 등이 資料의 自體保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다른 圖書館 등의 要求에 따라 絶版 그 밖에 이에 準하는 事由로 구하기 어려운 著作物의 複製物을 保存용으로 提供하는 境遇

2) 著作權法에 의한 圖書館의 範圍

資料를 公衆의 利用에 提供하는 施設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著作權法 施行令 第3條 “複製를

할 수 있는 施設”).

- ① 圖書館法의 規定에 의한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설립한 特殊 圖書館을 除外한다).
- ② 國家, 地方自治團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圖書·文書·記錄 그밖의 資料를 保存, 貸出 其他 公衆의 利用에 提供하기 위하여 設置한 施設
- ③ 其他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과 類似한 施設로서 文化公報部長官이 圖書, 文書, 記錄 그밖의 資料를 公衆의 利用에 提供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規定하는 施設로 3個 項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著作權法의 制定이 1986년 12월 31일 改正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施行되었고, 現行 圖書館振興法은 1991년 3월 8일 改正되어 同年 4월 9일 公布되었고 前에 있던 圖書館法은 閉止되었다.

著作權法 施行令 第3條 1項에 明示된 公共圖書館·學校 및 特殊圖書館은 圖書館振興法 第3條 “圖書館의 種類”의 구분에서 圖書館을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細分하였고 第3項의 文化公報部長官은 政府組織法改正에 因하여 文化部長官으로 表記하여야 한다.

IV. 圖書館 資料 使用에 關한 著作權法의 資料複製 範圍

1. 自由利用이 可能的 著作物

1)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 등(法 第7條)

著作物의 成立要件을 具備하였어도 法令이나 事實傳達에 불과한 時事報道에 關한 事項 등을 國民에게 弘報 또는 利用하는 것은 著作權法의 保護對象에서 除外시킴으로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法令
- ②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告示, 公告, 訓令 그 밖의 이와 類似한 것
- ③ 法院의 判決, 決定, 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의 이와 類似한 節次에 의한 議決, 決定 등
- ④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翻譯物
- ⑤ 事實의 傳達에 불과한 時事報道
- ⑥ 公開한 法廷·國會 또는 地方議會에서의 演述

2)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이 經過한 著作物

著作權法중에 明示된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이 지난 著作物은 著作權法의 保護對象에서 除外되어 利用이 가능하다.

- ① 著作財產權은 이 節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著作作者의 生存하는 동안과 死亡後 50년이 經過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公表된 著作物의 著作財產權은 公表된 때부터 10年間 存續한다(法 第36條 1項).
- ② 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產權은 맨 마지막으로 死亡한 著作作者의 死亡後 50年間 存續한다(法 第36條 2項).

- ③ 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異名이 表示된 著作物의 著作財產權은 公表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法 第37條 1項).
- ④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法 第37條 2項).
 - ㉠ 第1項의 期間內에 著作者의 實名 또는 널리 알려진 異名이 밝혀진 境遇
 - ㉡ 第1項의 期間內에 第5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著作者의 實名登錄이 있는 境遇
- ⑤ 團體名의 著作物의 著作財產權은 公表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한 때부터 10年 以內에 公表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創作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法 第38條).
- ⑥ 雜誌와 같이 繼續의 刊行物의 公表時期와 保護期間의 起算에 관하여는 法 第39條와 第40條에 規定이 정하여 있다.

3) 著作財產權의 消滅로 인한 著作物(法 第46條)

著作財產權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著作權이 消滅된 境遇에는 自由로 이 利用이 可能하다.

- ① 著作財產權者가 相續人 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權利가 民法 其他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歸續되는 경우
- ② 著作財產權者인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그 權利가 民法 其他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歸屬되는 경우

4) 國際著作權協約(UCC)加入에 따른 外國人의 著作物(法 第3條)

우리나라가 國際著作權協約(UCC)에 加入하여 法律效力이 發效하는 1987年 10月 1日 以前에 發行된 外國人의 著作物은 保護되지 않

기 때문에 자유로이 利用할 수 있으며, 美國은 韓·美協商協議에 따라 別途로 定하였다.

- ① 外國人の 著作物은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締結한 條約에 따라 保護된다. 다만, 당해 條約 發效日 以前에 發行된 外國人の 著作物은 保護하지 아니한다(法 第3條 1項).
- ② 美國의 著作物은 1986년 7월 21일에 妥結된 著作權保護에 관한 韓·美協商 協議 內容에 따라 改正著作權法 發效時로부터 1987年을 基準으로 10年 以前에 發行된 美國 出版物이 우리나라에 無斷 複製 出版·配布되지 않도록 行政指導를 통해 保護해 주기로 約束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7년 6월 20일 美國 著作物의 無斷 複製 出版·配布 禁止에 관한 政府方針을 發表하고 그 以後부터 行政指導를 實施하여 오고 있다.⁷⁾ 따라서 美國 出版物에 있어서는 自由 利用이 가능한 著作物은 1977년 7월 1일 以前에 發行한 것이어야 한다.

2. 圖書館 等에서의 複製 可能的 著作物

위에서 살펴 본 著作權法 第28條 (1)·(2)·(3)項이며 이는 圖書館 등에서 利用者の 情報提供 및 奉仕活動의 業務로서 圖書館 資料의 複寫를 利用者에게 提供을 可能하게 하는 規定이라 할 수 있겠다.

圖書館 등에서 중요한 業務의 하나인 複寫 提供을 可能하게 하는 規定으로서, 圖書館 등이 하여야 할 公共的인 奉仕 機能에 着眼한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 등이 利用者の 要求에 따라 행하는 複製物의 제공을 嚴格한 條件下에 許容함과 同時에, 學術研究의 進歩·發展에 圖

7) 황광수, 외국저작물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계간저작권(1989년 겨울호 통권 제8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9. 12.

書館 등의 役割이 至大함에 勘案하여 圖書館등이 資料의 保存·活用 上 必要로 하는 複製를 一定한 限度內에서 許容한 것이다.⁸⁾

V. 結 語

오늘날 圖書館은 科學技術의 發達로 인하여 多樣한 情報, 知識 및 各種 資料를 이용자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이러한 資料의 提供은 圖書館의 公共서비스 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圖書館의 資料提供은 많은 부분이 資料複製의 形態로 利用되고 있다. 이는 知的所有權의 範圍인 著作權을 侵害할 수 있는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圖書館은 各種 著作物을 公共使用의 目的으로 複製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著作權法에 抵觸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複製를 하여야 한다. 著作權法이 許容하는 範疇를 벗어난 複製는 著作權者에게 使用에 대한 正當한 댓가와 著作權者의 許諾을 得한 후 複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公共機關으로서의 責任이 따르기 때문이다.

著作權法에 따른 圖書館資料利用의 效率化를 위하여서는 圖書館에서 資料의 複製利用에 관한 規定이나 指針書를 만들어 著作權에 關하여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의 所持를 없애고 著作物을 合理的으로 利用하여야 한다. 全般的으로 細分化되지 않은 圖書館에서의 複製規定을 利用者의 多樣한 要求에 副應할 수 있게 具體化 또는 細分化하여야 한다.

특히, 圖書館에서 著作權의 侵害가 發生할 수 있다는 점에서 著作權法에 關하여 司書는 물론 圖書館人들의 많은 關心과 研究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8) 許燾成, 前揭書, p. 32.

參 考 文 獻

- 徐文植, 著作隣接權의 保護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0.
- 楊美姿, 著作權法 중 圖書館 關聯 規定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2.
- 李斗映, 複寫機器의 發達과 著作權 保護, 季刊著作權, 1990년 가을호, 제1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9.
- 李淳子, 著作權 保護와 圖書館에서의 著作物 公正사용에 관한 연구, 博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대학원, 1987.
- 李正相, 國際 著作權 條約加入과 國內出版의 現況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 張仁淑, 著作權法原論, 寶普齋出版社, 1989.
- 張仁淑, 세계의 저작권의 주요원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
- 韓勝憲, 著作權의 法制와 實務, 서울, 三民社, 1988.
- 許燾成, 新著作權法逐概說, 서울, 凡友社, 1988.
- 洪英義, 新著作權法과 圖書館의 複寫奉仕, 國會圖書館報, 第25卷 第5號 通卷 第199號, 1988. 10.
- 황광수, 외국저작물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季刊著作權, 1989년 겨울호. 제8호, 1989. 12.
- 黃迪仁, 鄭順女, 崔現鎬 共著, 著作權法, 法文社, 1988.